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26. ~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를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한다.

제6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법 제38조제3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3의6 및 별표 3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3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3항제3호”를 “법 제38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3항제4호”를 “법 제38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3항제5호”를 “법 제38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3항제6호”를 “법 제38조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의 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 우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	50	70	1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6]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의2제1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조직	산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는 것
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추는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시설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할 것

비고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 및 산림 관련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 관련 학과: 녹지조경학과, 목재응용과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과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학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학과, 환경생태공학과, 환경소재과학과, 환경원예학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2. 산림 관련 자격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나. 기사: 산림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별표 3의7]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의5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8조의5 제4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의5 제4항제3호	경고	지정 취소	
라.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의5 제4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장 산림문화자산의</u> <u>지정 · 관리</u> <u><신 설></u>	<u>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u> <u>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u> <u>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의5</u> <u>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u> <u>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u> <u>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u> <u>같다.</u> <u>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u> <u>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u> <u>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u> <u>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u> <u>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u> <u>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u> <u>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u> <u>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u> <u>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u> <u>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u> <u>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u> <u>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u> <u>해야 한다.</u> <u>④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u> <u>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u>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않는다. 1. 2. 삭제 3. ~ 8. (생략) 9.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 ----- 3.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조
---	--

<u>제3항제3호</u>부터 <u>제6호</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② (생략) ③ 삭제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 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 다. 1. ~ 3. (생략) 3의2. (생략) 4. <u>법 제38조제3항제2호</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⑥ (생략)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u> <u>38조제1항</u>부터 <u>제3항</u>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u>제4항제3호</u>----- ----- ----- ②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현행과 같음) 4. <u>법 제38조제4항제2호</u>-----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u> <u>38조제1항</u>부터 <u>제4항</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연 락 처	(042) 481 - 4215